

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41호      2016. 9. 30(금)

## 고시

○ 남원시 고시 제2016 - 139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.....1

## 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11호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외 1건 폐지(안) 입법예고 ..... 2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05호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.....9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06호 도시계획시설(향교동 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..... 11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13호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13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1218호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3
- 남원시 공고 제 2016 - 27 호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..... 31

<b>회 람</b>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16 - 139 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,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09월 30일

남 원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개간사업
- 2.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
- 3. 사 업 비 : 자력사업
- 4. 사업내용
  - 가. 위 치 :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산62-1번지
  - 나. 사 업 량 : 4,950㎡
  - 다. 사업기간 : 2016. 09. ~ 2017. 09. 30.
  - 라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사매면 영의\*길 \*-\*, 이 \* \*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(620-639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6 - 1211 호

##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1건 폐지(안) 입법예고

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, 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30일

남 원 시 장

### 1.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

- 남원역 앞 신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“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”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 청산금,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 완료로 본 조례의 효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, 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」 폐지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폐지조례·시행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다. 의견제출할 곳 : (우)55738 남원시 시청로 60

남원시 도시과(전화 : 063-620-6473, FAX : 063-620-6716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

(<http://www.namwon.go.kr/>)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### 4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도시과 도시재생담당자 류경록

(전화 : 063-620-647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  
 제출자 : 남원시장  
 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

## 1. 폐지이유

남원역 앞 신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“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”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 청산금,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 완료로 본 조례의 효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개발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9. 30. ~ 10. 20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  
 제출자 : 남원시장  
 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

#### 1. 폐지이유

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 폐지에 따라 그 시행  
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개발법」 및 「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 
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16. 9. 30 . ~ 10. 20. (20일간)
  - 결 과 : 의견 없음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(안)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**남원시장 귀하**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(안)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공고 제2016 - 1205호

##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

남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

2016년 09월 30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 - 가. 명 칭 :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사업
 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   - 위 치 :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636-6번지 일원
    - 사업면적 : 2,660㎡(전체 45,061㎡)
    - 기반시설 : 5,976㎡(에코롯지 진입도로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남원시장
 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참조
5. 열람기간 :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
6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52)
7.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※ 붙임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1) 에코롯지

구분	행정구역	지 번	지목	면 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합 계				2,660			
1	남원 운봉 주촌	산55-1	임	437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2	남원 운봉 주촌	산55-5	임	251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3	남원 운봉 주촌	636-6	체	1,972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
2) 진입도로

구분	행정구역	지 번	지목	면 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합 계							
1	남원 운봉 주촌	산55-1	임	1,287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2	남원 운봉 주촌	산55-5	임	880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3	남원 운봉 주촌	산55-10	임	271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4	남원 운봉 주촌	595-33	체	3,186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5	남원 운봉 주촌	636-2	체	172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6	남원 운봉 주촌	636-6	체	375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
남원시 공고 제2016 - 1206호

## 도시계획시설(향교동 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

남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

2016년 09월 30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(향교동 체육시설)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 - 가. 명 칭 :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
 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   - 위 치 : 남원시 향교동 산4-1번지 일원
    - 사업면적 : 11,000m<sup>2</sup>
    - 사업내용 : 마운딩, 곤충호텔, 전망데크, 파고라 등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남원시장
 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참조
5. 열람기간 :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
6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52)
7.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※ 붙임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구분	행정구역	지 번	지목	면 적(m <sup>2</sup> )	소유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합 계				11,000			
1	남원 향교	5-1	채	175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2	남원 향교	6-1	채	80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3	남원 향교	산5-1	채	5,778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4	남원 향교	산3-25	채	2,766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5	남원 향교	산4-1	채	2,201	남원시	남원시 시청로 60	

남원시 공고 제2016 - 1214호

##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9. 29 .

### 남 원 시 장

1. 조례명: 「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
2. 입법예고 기간: 2016. 9. 29. ~ 10. 19.(20일간)
3. 의견제출: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민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

나. 의견제출할 곳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민원과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팩스(063-620-6705), 직접방문, 인터넷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담당자 김경진(전화 : 063-620-6142)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

#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민 원 과 장

## 1. 개정이유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상위 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 ⇒ 「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

나.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민단체 추천자로 확대 (안 제2조)

다.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신설 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9. 29. ~ 2016. 10. 19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명** “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**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** 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2조** 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2.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제3조 중 “3인이상 7인 이내”를 “3명 이상 7명 이하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 같은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

제4조제2호 중 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1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7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
제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위원중 공무원이 아닌”을 “위원 중 위촉직”으로, 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”를 “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,”로, “잔임기간”을 “전임자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, “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”를 “3일 전에 의안을 붙여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과 서기 1인”을 “1명과 서기 1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

과 같이 한다.

6. 그 밖의 중요사항

제10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서명 날인하여”를 “서명·날인하여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-----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 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4. (생 략)

제3조(소위원회) 토지 및 주택가  
격공시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  
요한 경우 위원중 3인이상 7인  
이내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  
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  
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 
에 응하여야 한다.

1.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 
평가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  
"이라 한다)제11조의 규정에  
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 
관한 사항

2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  
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
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  
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

2.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  
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  
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 
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 
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 
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  
한 사람

4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소위원회) -----  
-----  
----- 3명 이상 7명 이하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기능) ----- 다음 각 호  
의 -----  
-----.

1. 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 
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 
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
의 결정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1조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

3. 법 제17에 따른 -----  
-----

항

4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직무) ① (생 략)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

---

4. 법 제17조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

5.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
6.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-----.

제6조(임기) 위원 중 위촉직 -----  
----- 하되,  
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, ---  
-- 전임자의 남은 기간--.

제7조(회의) ① -----  
-----  
----- 경우 -----  
----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-----

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가 또는 주택가격관련 업무별로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회의록)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기타 중요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및 여비)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1명과 서기 1명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회의록) ① -----  
각 호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의 중요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서명·날인하여 -----  
-----.

제12조(수당 및 여비) -----  
-----  
경우에는-----  
-----  
따라 -----  
--.

제13조(시행규칙) -----  
필요한 -----  
-----.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		
2. 제출 자	성명(명칭)		
	주 소		
3. 의 견			
4. 기 타	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#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## 남원시 공고 제2016-1218호

「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30일

## 남 원 시 장

**「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조례」  
제정(안) 입법예고**

## 1. 제정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 범위(안 제3조)
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서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·중학생
- 지원대상자 결정(안 제4조)
  -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
- 지원방법(안 제5조)

- 남원시 소재 학습시설에서 학습활동 하는 학생에게 지원
- 2개월 동안 이용실적 없을 경우에는 지원 중지

### 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교육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  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할 곳: 우) 55732 / 남원시 충정로 341, 춘향골체육관 3층 교육체육과  
 다. 의견 제출 방법: 서면, 팩스(063-620-6708), 직접 방문 등

### 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(☎063-620-56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  
 제출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교육체육과장

### 1. 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 교육 과정  
 의 학습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복지 혜택의  
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대상 범위(안 제3조)
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서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·중학생
- 나. 지원대상자 결정(안 제4조)
  -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
- 다. 지원방법(안 제5조)
  - 남원시 소재 학습시설에서 학습활동 하는 학생에게 지원
  - 2개월 동안 이용실적 없을 경우에는 지원 중지 등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 : 2016. 9. 30. ~ 2016. 10. 20. (20일간)
    - 결 과 :
  - 2) 비용추계서 : 별첨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남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습활동비”란 예·체능 학습시설 또는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습시설에 드는 수강비용과 이에 따른 교재 구입비용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 범위)**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서 남원시 관내 초·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보호자와 학생이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

**제4조(지원대상자 결정)** 지원 대상 학생은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.

**제5조(지원방법)**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남원시 소재 학습시설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지원을 원칙으로 함.

2. 2개월 동안 학원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며 다음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제6조(학습시설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시설 등은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및 출석관리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7조(확인·점검) 남원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학습활동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○ 비용발생요인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 교육 과정 외 학습활동비 지원

#### ○ 관련조문

- 지원대상 범위(조례안 제3조)
- 지원대상자 결정(조례안 제4조)
- 지원방법(조례안 제5조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# ○ 연간예산: 118,800천원

- 수강료: 94,800천원(기준수강료 초 150천원, 중 170천원의 50%)
- 교재비: 24,000천원(월 20천원 전액)

#### ○ 연도별 예산

- 2017년 : 118,800천원
- 2018년 : 130,800천원      - 2020년 : 170,400천원
- 2019년 : 142,800천원      - 2021년 : 196,200천원

### 3. 재원 조달 방안

- 2017년 : 118,800천원 (시비)
- 2018년 : 130,800천원 (시비)
- 2019년 : 142,800천원 (시비)
- 2020년 : 170,400천원 (시비)
- 2021년 : 196,200천원 (시비)

※ 수강료: 시비 50%, 학원 40%, 자부담 10%  
교재비: 시비 전액 지원

[별지 제2호서식]

## &lt;연도별 비용 추계표&gt;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계	
<b>세 입</b>	118,800	130,800	142,800	170,400	196,200	759,000	
국 비						0	
도 비						0	
시 비	118,800	130,800	142,800	170,400	196,200	759,000	
자체수입(입장료)						0	
기타수입						0	
<b>세 출</b>	118,800	130,800	142,800	170,400	196,200	759,000	
수강료	94,800	104,400	114,000	123,600	142,200	579,000	
교재비	24,000	26,400	28,800	46,800	54,000	180,000	
기 타						0	
제원 조달	118,800	130,800	142,800	170,400	196,200	759,990	
의존 제원	소 계	118,800	130,800	142,800	170,400	196,200	759,000
	국비						0
	도비						0
	시비	118,800	130,800	142,800	170,400	196,200	759,000
자체 수입	소 계						0
	지방채						0
	세외수입						0
	입장료수입						0
	기타수입						0
지방채						0	
기 금						0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0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0	

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소	
3. 의견		
4. 기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서 제출인 주소 :  
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화 :

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공고 제2016 - 27호

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2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일

남 원 시 장

1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○ 개정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별지 제1호 서식 중 붙임 내용 수정

- 주민등록등본 1부 ⇒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

- 농지원부 1부 ⇒ 농지원부 1부 지참

○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농촌진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다. 의견제출할 곳 : (우)55723 남원시 이백로 309 남원시 농업기술센터

농촌진흥과 (전화 : 063-620-8003, FAX : 063-635-9757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 
(<http://www.namwon.go.kr/>)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4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

담당자 장환탁(전화 : 063-620-802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.  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 
제안설명자 : 농촌진흥과장

## 1. 개정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별지 제1호 서식 중 붙임 내용 수정
  - 주민등록등본 1부 ⇒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
  - 농지원부 1부 ⇒ 농지원부 1부 지참
-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### 1)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10. 1. ~ 2016. 10. 19.(20일간)
- 결 과 :

### 2) 비용추계서 : 관련없음

###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2016-27호

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 
법」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부정한 방법으로”를 “거짓 또는 허위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을”을 “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  
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교육비 지원 신청서

성 명		생년월일 (남/여)	
주 소		전화번호 (HP)	
직 업		면허취득기종	
남 원 시 거주기간	년 월	일부터	년 월 일(년 월)
교 육 비		신 청 액 (교육비 50%)	
계좌번호			

본인은 「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탁 교육비를 신청합니다.

- 붙 임 : 1. 주민등록 등본 1부 **지참**.  
 2. 농지원부 1부 **지참**.  
 3. 교육이수증 1부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명 : 인

남원시장 귀하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<u>자로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정의</u>에 준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중에 <u>한하여</u> 총 교육비의 <u>50%까지</u> 지원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하여</u> ----- - <u>50퍼센트</u>-----.</p>
<p>제8조(교육비 반납)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<u>부정한 방법으로</u>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교육비 반납) ----- ----- <u>거짓 또는 허위로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<u>남원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준용) ----- ----- 「<u>남원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-----.</p>

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